



# 뉴욕 재개

##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지침

본 지침은 [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\(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\)](#)가 실외 저위험군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판단하여 주 전역에서 허용된 활동에 즉시 효력을 가집니다. 본 문서에 포함된 모든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경우, 주정부 재개 3단계에 진입하였거나 이후 단계로 넘어간 지역에서 본 지침의 내용은 2020년 7월 6일부터 유효합니다.

본 지침은 또한 체육관/피트니스 센터/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비전문 및 비대학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도 적용됩니다.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해당 지역의 비필수 모임 인원 제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이상의 인원이 이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설에서 현재 실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, 모든 레크리에이션 사업체/리그/조직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.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, 주, 연방의 법, 규정,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. 자세한 내용은 "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코로나19 임시 지침(Interim COVID-19 Guidance for Sports and Recreation)"을 참조하십시오.

위험 개요	설명	스포츠(일부)	허용되는 게임 종류
고위험군 스포츠	물리적 거리 유지 및/또는 개발적 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스포츠 진행 가능  최소 다음의 내용이 가능: 1. 공유 장비 만지지 않음. 2. 사용자가 바뀌기 전에 장비 세척/소독. 또는 3. 공유 장비 사용하지 않음.	미식축구  레슬링  아이스하키  럭비  농구  선수 간 접촉이 있는 라크로스	배구  경쟁 치어/댄스          X 개인 또는 원거리 그룹 교육 또는 활동 X 무/저접촉 그룹 훈련 조직(스포츠 캠프 및 클리닉 등) X 경쟁적인 팀 관행 X 게임, 미팅, 경기, 스크림(리그 조직, 픽업 스포츠 등) X 이동을 필요로 하는 복수의 게임, 미팅, 매치, 스크림으로 구성된 경쟁 토너먼트
중위험군 스포츠	물리적 거리 유지 및/또는 개발적 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스포츠 진행 가능  제한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가능: 1. 공유 장비 만지지 않음. 2. 사용자가 바뀌기 전에 장비 세척/소독. 또는 3. 공유 장비 사용하지 않음.	야구/소프트볼  복식 에니스  라켓 게임 (배드민턴, 라켓볼 등)  수구  체조  필드 하키  수영 계주	조정(선수 2명 이상)  래프팅  페인트볼  축구  접촉이 없는 라크로스       X 개인 또는 원거리 그룹 교육 또는 활동          X 무/저접촉 그룹 훈련 조직(스포츠 캠프 및 클리닉 등)          X 경쟁적인 팀 관행
저위험군 스포츠	물리적 거리 유지 및/또는 개발적 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대부분 진행 가능  다음의 내용을 대부분 진행 가능: 1. 공유 장비 만지지 않음. 2. 사용자가 바뀌기 전에 장비 세척/소독. 또는 3. 공유 장비 사용하지 않음.	개인 육상  배팅 케이지  사냥/사격/양궁  골프/미니골프  무동력 보트  단식 테니스  암벽 등반	개인 수영  개인 조정  크로스 컨트리 육상  토스/구기(호스 슈즈, 보체, 빈백 토스 등)  플라잉 디스크 경기(디스크 골프, 프리스비 등)  로프 코스          X 게임, 미팅, 경기, 스크림(리그 조직, 픽업 스포츠 등)          X 이동을 필요로 하는 복수의 게임, 미팅, 매치, 스크림으로 구성된 경쟁 토너먼트.

STAY HOME.

STOP THE SPREAD.

SAVE LIVES.



# 뉴욕 재개



##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지침

본 지침은 [엠페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\(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\)](#)가 실외 저위험군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판단하여 주 전역에서 허용된 활동에 즉시 효력을 가집니다. 본 문서에 포함된 모든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경우, 주정부 재개 3단계에 진입하였거나 이후 단계로 넘어간 지역에서 본 지침의 내용은 2020년 7월 6일부터 유효합니다.

본 지침은 또한 체육관/피트니스 센터/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비전문 및 비대학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도 적용됩니다.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해당 지역의 비필수 모임 인원 제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이상의 인원이 이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설에서 현재 실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, 모든 레크리에이션 사업체/리그/조직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.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, 주, 연방의 법, 규정,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. 자세한 내용은 "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코로나19 임시 지침(Interim COVID-19 Guidance for Sports and Recreation)"을 참조하십시오.

	필수	권장 모범 사례
물리적 거리두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모든 실내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경우 직원, 고객/선수/관중을 포함하여 특정 지역의 점유율을 최대 수용 인원의 50 퍼센트 이하로 제한하십시오.</li> <li>✓ 선수 한 명 당 관중은 2명 이하로 허용합니다.</li> <li>✓ 안전 혹은 핵심 활동(연습, 경기 등)이 더 짧은 거리를 요구하지 않는 한 실내 또는 실외에서 개인 간 거리는 항상 6피트를 유지합니다. 만약 더욱 짧은 거리가 필요하다면, 선수가 신체 활동(연습, 놀이)을 위해 커버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, 개인은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. 단, 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코치, 트레이너 및/또는 기타 개인은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.</li> <li>✓ 체크인/예약 데스크 직원은 물리적 장벽이 설치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6피트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. 직원은 고객/선수/관중과 접촉할 때마다 허용되는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.</li> <li>✓ 내부 직원을 위한 모든 공용 공간을 비롯해 일반적으로 줄이 형성되거나 사람이 모이는 모든 구역(휴게실, 장비 반납 구역, 금전 등록기 구역, 라커룸 등)에서 6피트 공간을 나타내는 표지 및 거리 마커를 게시합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고객/선수 및/또는 팀의 시설 이용 스케줄을 교대로 지정합니다.</li> <li>✓ <a href="#">직업안전 위생국(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, OSHA)</a> 지침에 따라 공기 흐름, 난방, 냉각 또는 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 약구역에서 플라스틱 차단벽과 같은 물리적 장벽을 설치합니다.</li> <li>✓ 좁은 길, 복도 또는 공간에 화살표가 표시된 표지를 게시하여 레이아웃을 수정하고 고객/선수/관중의 양방향 이동량을 줄입니다.</li> <li>✓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좁은 공간(금전 등록기, 장비, 체크아웃 구역 등)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. 단, 모든 개인이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</li> <li>✓ 가능한 경우 고객들이 터치리스 지불, 선불, 예약 등의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.</li> </ul>
현장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야외 피트니스 수업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사회적 모임 제한에 따라 수업 참여자 수를 제한합니다.</li> <li>• 고객들이 다른 참여자 및 강사와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.</li> <li>• 신체 접촉을 지속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고위험군 활동(무술, 복싱 등)을 금지합니다.</li> </ul> </li> <li>✓ 최대 점유율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 지역의 인구 흐름을 모니터링 및 제어해야 합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단체 접촉이 발생하는 스포츠/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경우, 가능한 경우 원격 체크인을 이용하십시오(경기장, 티 타임 예약 등).</li> <li>✓ 야외 피트니스 수업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객이 자신의 장비(요가 매트 등)를 가져오게 하거나, 사용 후 다른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세척/소독하도록 권장하십시오.</li> <li>• 개인이 수업 참석 시간을 지정하기 위해 등록할 때 운동 "시프트"를 시행하고 일관성 있게 단체가 유지되도록 합니다(매번 같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등).</li> <li>• 직접 지도(요가 등)를 자제하십시오.</li> </ul> </li> </ul>

STAY HOME.

STOP THE SPREAD.

SAVE LIVES.



# 뉴욕 재개



NEW YORK STATE

##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지침

본 지침은 [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\(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\)](#)가 실외 저위험군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판단하여 주 전역에서 허용된 활동에 즉시 효력을 가집니다. 본 문서에 포함된 모든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경우, 주정부 재개 3단계에 진입하였거나 이후 단계로 넘어간 지역에서 본 지침의 내용은 2020년 7월 6일부터 유효합니다.

본 지침은 또한 체육관/피트니스 센터/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비전문 및 비대학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도 적용됩니다.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해당 지역의 비필수 모임 인원 제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이상의 인원이 이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설에서 현재 실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, 모든 레크리에이션 사업체/리그/조직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.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, 주, 연방의 법, 규정,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. 자세한 내용은 "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코로나19 임시 지침(Interim COVID-19 Guidance for Sports and Recreation)"을 참조하십시오.

	필수	권장 모범 사례
현장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든 식음료 서비스 활동에 대해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음식 서비스 지침을 따르십시오.</li> </ul>	<p>골프 코스/주행 범위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같은 가족이 아닌 한, 동일 티 타임 참여 인원은 4인으로 제한합니다.</li> <li>가시성/카트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물리적 장벽이 설치되지 않는 한, 골프 카트의 사용은 한 사람 또는 동일 가정 구성원으로 제한합니다.</li> <li>가능한 경우 골프 가방을 직접 소지합니다.</li> <li>병커 레이크(직원/유지 보수 직원 제외), 볼 와셔 및 워터 쿨러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</li> <li>물리적 장벽으로 분리하거나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지 않는 한, 골프 프로 선수들은 이용자와 접촉하지 않고 항상 6피트 거리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코스 입장이 허용됩니다.</li> <li>동일한 가정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이 티/스코어 카드/연필/볼 마커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 단, 타인이 사용하기 전에 이러한 물품을 청소/소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</li> <li>선수 사용 전/후 청소/소독할 경우, 클럽/장비 대여만을 허용합니다.</li> <li>임시 규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메시지/표지를 게시합니다.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선된 청소/소독 절차를 위해 필요에 따라 운영 시간을 조정합니다.</li> <li>단체 모임을 자제하도록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표지를 게시하여 모든 시간대에 걷기, 달리기, 하이킹 트레일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합니다.</li> </ul>
보호 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물리적 장벽이 설치되지 않는 한,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(코치, 관중 등)은 타인과 6피트 이내에서 접촉하는 경우 적절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.</li> <li>직원들은 거리에 관계없이 고객/선수/관중과 접촉할 때 반드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.</li> <li>고용주는 직원에게 무료로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교체용 커버를 적절히 제공해야 합니다.</li> </ul>	

STAY HOME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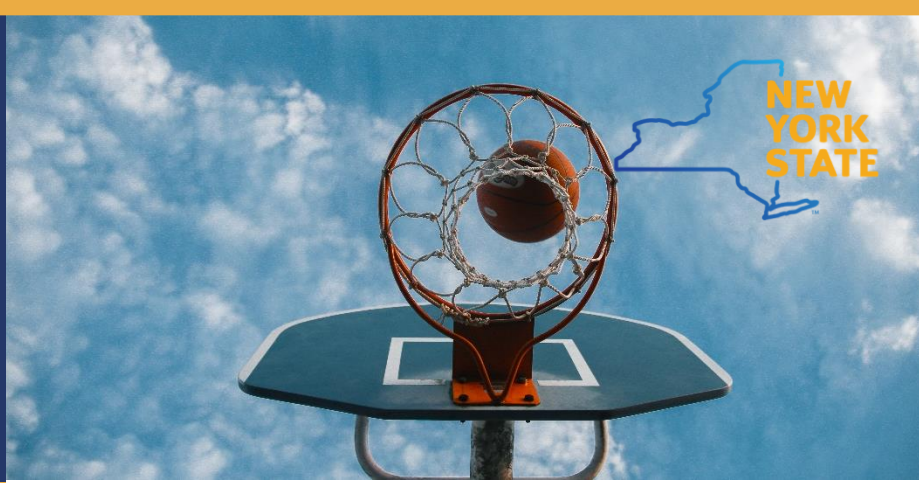
STOP THE SPREAD.

SAVE LIVES.





# 뉴욕 재개



##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지침

본 지침은 [엠페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\(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\)](#)가 실외 저위험군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판단하여 주 전역에서 허용된 활동에 즉시 효력을 가집니다. 본 문서에 포함된 모든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경우, 주정부 재개 3단계에 진입하였거나 이후 단계로 넘어간 지역에서 본 지침의 내용은 2020년 7월 6일부터 유효합니다.

본 지침은 또한 체육관/피트니스 센터/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비전문 및 비대학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도 적용됩니다.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해당 지역의 비필수 모임 인원 제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이상의 인원이 이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설에서 현재 실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, 모든 레크리에이션 사업체/리그/조직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.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, 주, 연방의 법, 규정,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. 자세한 내용은 "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코로나19 임시 지침(Interim COVID-19 Guidance for Sports and Recreation)"을 참조하십시오.

	필수	권장 모범 사례
보호 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허용되는 페이스 커버에는 천(수제 봉제, 임시 가리개, 두건 등), 수술용 마스크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.</li> <li>✓ 페이스 커버를 세탁, 교체 및 공유하지 마십시오. 천 소재 페이스 커버 및 기타 유형의 PPE에 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세척, 소독에 대한 정보는, CDC 지침을 참조하십시오.</li> <li>✓ 근로자에게 PPE를 착용, 탈착, 세척(해당되는 경우), 폐기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.</li> <li>✓ 물체(장비 등)의 공유를 제한하고 공유 표면(금전 등록기 등)을 만지지 않도록 하거나, 공유 물체 또는 접촉이 잦은 구역과 접촉할 때는 장갑(업무 관련 또는 의료용)을 착용하거나, 접촉 후 손 소독하거나 씻으십시오.</li> </ul>	
위생, 청소 및 소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<a href="#">질병 통제 예방 센터(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, CDC)</a> 및 <a href="#">보건부(Department of Health, DOH)</a>의 위생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날짜, 시간 및 청소 범위를 기록한 청소 일지를 현장에 유지하십시오.</li> <li>✓ 비누, 물 및 종이 타올로 손을 씻는 것 또는 손 씻기를 실행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알코올을 60 퍼센트 이상 함유한 알코올 성분 손소독제를 포함하여 직원을 위한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 및 유지합니다.</li> <li>✓ 손소독제는 직원 및 고객/선수/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장 전체에 배치해야 합니다.</li> <li>✓ 직원들이 자주 접촉하는 공유 표면을 사용하기 전에 청소 및 소독 용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, 그 후 손 위생 조치를 수행하도록 합니다.</li> <li>✓ 직원의 음식과 음료의 공유(뷔페 스타일 식사 등)를 금지하고 집에서 점심을 가져 오도록 권장하며 식사를 하면서 사교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합니다.</li> </ul>	



# 뉴욕 재개



##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지침

본 지침은 [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\(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\)](#)가 실외 저위험군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판단하여 주 전역에서 허용된 활동에 즉시 효력을 가집니다. 본 문서에 포함된 모든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경우, 주정부 재개 3단계에 진입하였거나 이후 단계로 넘어간 지역에서 본 지침의 내용은 2020년 7월 6일부터 유효합니다.

본 지침은 또한 체육관/피트니스 센터/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비전문 및 비대학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도 적용됩니다.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해당 지역의 비필수 모임 인원 제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이상의 인원이 이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설에서 현재 실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, 모든 레크리에이션 사업체/리그/조직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.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, 주, 연방의 법, 규정, 기준을 교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. 자세한 내용은 "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코로나19 임시 지침(Interim COVID-19 Guidance for Sports and Recreation)"을 참조하십시오.

	필수	권장 모범 사례
위생, 청소 및 소독(계속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공유 물품 및 표면을 포함하여 결계 장비, 픽업 구역, 화장실, 공용 구역 등 사람의 이동이 잦은 구역은 환경보호청 (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, EPA)이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고 인정한 환경보존부(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, DEC) <a href="#">제품</a>을 사용하여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합니다.</li> <li>✓ 청소 또는 소독 제품이나 청소 및 소독 행위가 안전상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소재나 기기를 손상하는 경우, 직원은 사용 중 손위생 스테이션을 사용 및/또는 일회용 장갑을 제공받아야 합니다.</li> </ul>	
의사소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주정부가 지정한 업계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준수할 것임을 보증해야 합니다.</li> <li>✓ 적절한 위생,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, PPE의 적절한 사용,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원 및 고객에게 상기시키도록 시설 또는 구역 내부 및 외부에 표지판을 게시하십시오.</li> <li>✓ 현장에 완성된 안전 계획을 눈에 띄게 게시합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지역사회 조직, 리그 등과 협력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관된 수단으로 직원, 방문자 및 고객을 위한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합니다.</li> </ul>
선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전 직원 및 가능한 경우 벤더에게 필수 건강 선별 검사(설문지, 체온 검사 등)를 진행하며, 고객/선수/관중 혹은 배송 인력에게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.</li> <li>✓ 최소한 선별 단계에서 반드시 근무자 또는 벤더가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. (1) 지난 14일간의 코로나19 <a href="#">증상</a>, (2) 지난 14일간 코로나19 검사 양성 결과 및/또는 (3) 지난 14일간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사례와의 근접 또는 밀접한 접촉. 평가 응답은 매일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검토는 문서화해야 합니다.</li> <li>✓ 현장 안전 계획의 모든 측면을 지속적인 준수를 포함한 책임을 담당하며 현장 안전 모니터를 임명합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현장에 통보하기 전 최대한 원격 선별(전화 또는 전자적 조사 등)을 실시합니다.</li> <li>✓ 현장 선별자는 고용주가 임명한 CDC, DOH 및 OSHA 프로토콜 숙지자가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, 최소한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여 적절한 PPE를 착용해야 합니다.</li> <li>✓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, 코로나19 확진자 직원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한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경우 프로토콜과 정책에 대해서는 DOH <a href="#">지침</a>을 참조하십시오.</li> </ul>



# 뉴욕 재개



##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지침

본 지침은 [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\(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\)](#)가 실의 저위험군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판단하여 주 전역에서 허용된 활동에 즉시 효력을 가집니다. 본 문서에 포함된 모든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경우, 주정부 재개 3단계에 진입하였거나 이후 단계로 넘어간 지역에서 본 지침의 내용은 2020년 7월 6일부터 유효합니다.

본 지침은 또한 체육관/피트니스 센터/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비전문 및 비대학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도 적용됩니다.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해당 지역의 비필수 모임 인원 제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이상의 인원이 이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설에서 현재 실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, 모든 레크리에이션 사업체/리그/조직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.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, 주, 연방의 법, 규정,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. 자세한 내용은 "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코로나19 임시 지침(Interim COVID-19 Guidance for Sports and Recreation)"을 참조하십시오.

	필수	권장 모범 사례
선별(계속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적절한 PPE나 비접촉 수단을 통해 실시하는 배송 및 후원자/선수/관중을 제외하고 직장 또는 지역의 다른 개인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연속적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.</li> <li>✓ 필요한 경우 접촉자 추적을 위해 기록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후원자/선수/관중에게 보건 선별 설문을 작성하고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십시오.</li> </ul>